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3. 11 선고 2019가단2232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최종원, 박세영, 유혜승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지영

변론 종결 2021. 2. 4

판결 선고 2021. 3.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과 피고 사이에 별 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31. 체결된 분양권 증여 계약을 25,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와 사이의 보증약정에 따른 채권자인 바, 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19. 1.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 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B 이 위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으로 지급한 25, 800, 000원 상당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 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 의인식의 정도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 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을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B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신청 을 하였고, 이후 B이 분양을 받게 되자, 2016. 5. 경부터 B으로부터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사실상 양수받아 계약금을 포함한 각종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 온 사 실을 인정할 수있는 바, 위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은 분양계약 당시부터 이미 피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B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정정호

별지